

7.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

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소득자원과(지도관 남윤우 031-229-5881)입니다.

가. 목 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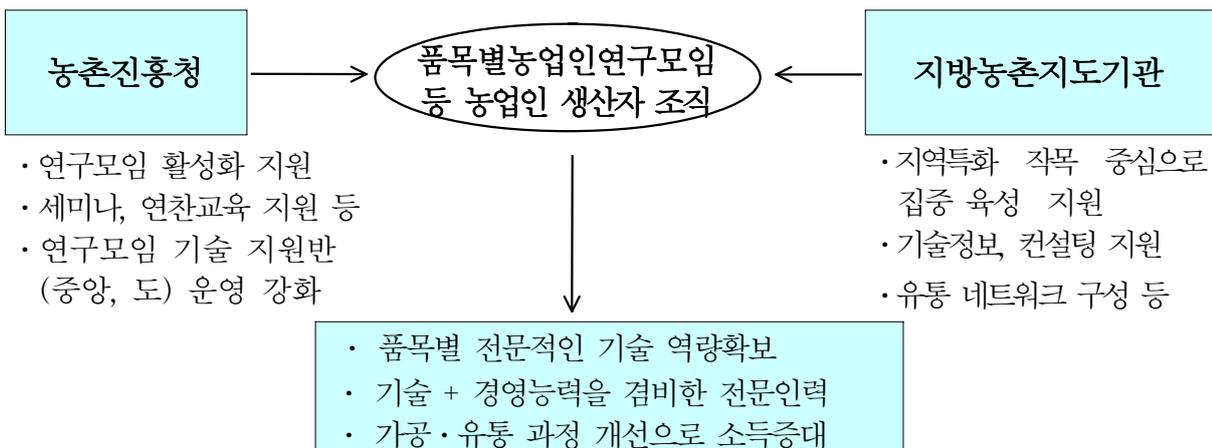
-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조직을 대상으로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주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
- 품목별 자율학습 연구모임 등을 조직, 새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협동경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

나. 추진 방향

- 지역특성에 맞게 연구모임 등 생산자 조직 지도체제를 구축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영농현장문제해결과제 지원사업 추진
 - 학습단체 회원이 다수 참가하는 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원
- 품목별 농업인 생산자 조직과 적극 연계하여 생산과 경영, 유통 등에 관한 기술정보 교류 강화
- 연구모임 활동 우수사례 홍보 강화 - 농업전문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

다. 근거법령 : 농촌진흥법 제2조 2항, 3항

라. 육성체계



마. 지도내용

-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육성 기반 조성
 - 조직체계 확립 : 시군, 도·광역단위 자율 육성
 - ① 시군단위조직
 - 지역내 대표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10~15회 조직운영
 - 조직 규모(회원수)는 품목 및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
 - ② 도 및 광역단위 조직
 - 품목농가가 적은 품목은 3~4개 시군 또는 도단위 광역조직으로 운영
 - 농업기술원 및 소속 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·지도공무원과 연계강화
 - 각급 단위 지도기관의 부서별 역할 분담 활동지원
 - ① 총괄부서와 품목별 전문지도부서의 분리 운영
 - 총괄담당 : 종합육성계획 수립 등(기관장이 부서 지정)
 - 조직담당 : 해당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책임육성
예) 쌀 연구모임 → 수도담당, 양돈연구모임 → 축산담당 등
 - ② 효율적인 연구모임 등 생산자 조직 육성지도를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책임지원제 운영
 - 복수담당제(정·부담당 지정), 1지도사 1품목지도책임제 등
 - ※ 전문지도연구회 1회원 1연구모임 책임 지도
 - 자생력 제고를 위한 회원중심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
 - 연구모임 회칙 등의 제정으로 조직 운영의 체계화
 - 연구모임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조성 활용
-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조직 지원 강화
 - 새기술 시범, 경영컨설팅 등 우선 지원
 - 연구기관의 신기술투입 접목연구와 연계 연구과제에 참여, 농업인개발 과제 적극 참여 권장
 - 새기술 시범사업, 지역특성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 지원 확대
 -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우수 사례 발굴 홍보 강화
 - 농업전문지 등 언론매체 활용, 활동사례집 제작 보급, 외래강사 초청, 유통업체 연계 등

○ 연구모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활동 전개

-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연구모임 개최

- 분기별 1회 이상 자기주도 학습 : 개인연구과제 발표 등 기술정보 교환
- 농촌지도기관의 각종 품목별 전문교육을 농업인 생산자 조직, 연구모임중심으로 운영
- 전문지도연구회와 합동연찬회, 유통현장교육 연 1회 이상 개최

-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정례 연찬회 개최(중앙) : 2회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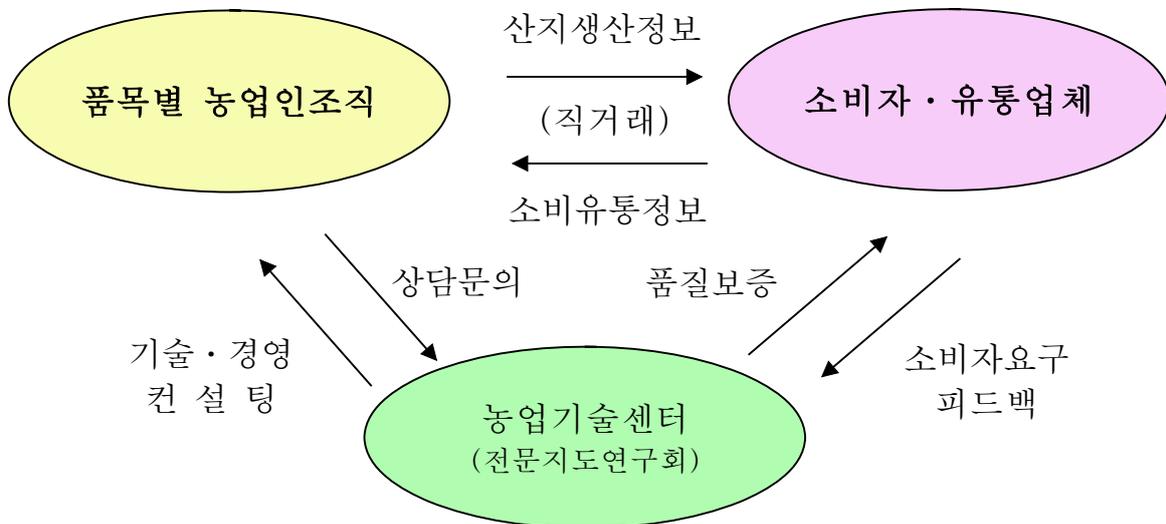
- 업무담당 공무원 및 연구모임 임원 등
- 활성화 방안, 유통판매, 홍보, 리더십, 수출시장 개척 등

-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임원 과제교육(도단위)

- 기 간 : 1~2일간(상반기 중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기, 기간 조정)
- 주요내용 : 조직운영 기법 및 자기학습의 효율적 방안 등

- 자율학습(과제교육)에 대한 만족도 조사

○ 농산물 생산·유통·판매 등에 관한 기술정보 지원



- 연구모임과 전문지도연구회, 소비자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

- 전문지도연구회원 중심 연구모임과 소비자 연계 활동 강화
-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직거래 사업 활성화로 제값받기 실현
- 소비자 및 유통업체와 연계 강화 : 도, 시군당 1개회 이상 시범운영 후 확산

- 『품목별생산자정보』 (<http://agkore.com>)활용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전산관리 지도 강화

- 시군별 농업인연구모임 현황 자료 전산입력
-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일품목 간 기술정보경영교류
- 연구모임별 전자상거래 추진 및 경영기법 지도
- 유통정보 습득 등 정보화 활용 능력 배양
 - 주요 품목별 농산물 소비동향 및 가격정보 분석 등
 - 생산량 조절을 위한 지역별 작부체계 개선 및 출하물량 조절
 - 농업회계, 농가경영장부 등 경영분석 활용 등
-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지도
 - 포장재 개발 등 농산물 규격화·표준화 생산 활동 지도
 -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체 『브랜드개발』 연구 활용
 - 친환경 품질인증, 농축산물이력정보체계 도입 활용 등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체계적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도 강화
 - 기초단계(매우미흡, 미흡)
 - 회칙 제정 및 운영(조직구성, 회의 진행, 사업 등), 품목별 기술지원, 과제교육, 정보교환, 자조금 조성 등
 - 성장단계(보통)
 - 자율적 회의 운영,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(농업인개발과제 수행 등), 공동 교육·생산·구매·판매·유통, 영농현장문제 과제 발굴 사업화, 선진지 견학 및 연찬, 품질관리 기술, 브랜드 개발, 관리자(임원 등) 리더십 교육
 - 자립단계(활발, 매우활발)
 - 농산물 품질인증 획득, 수확후 관리기술, 가공사업 개발, 협의체(법인) 구성 공동경영, 수출시장 확보, 내수 유통업체 발굴,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상거래 추진, 우수 활동사례 홍보 및 전파

바.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체계적 평가 활동 강화
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
- 객관적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
- 조직 관리, 활동 상황, 유통·경영, 홍보 등 평가

- 회원 규모(10) : 회칙 유무, 품목농가수 대비 회원수, 활동 연수
- 자조금 적립(10) : 회비납부 유무, 잉여금 적립, 자조금 조성
- 회원활동(50) : 모임 회수, 과제교육 및 참여율, 과제발표수, 홍보실적, 수상 실적, 해외연수 실적
- 공동사업(30) :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유무, 농산물 품질인증 유무, 시장개척(내수, 수출), 공동 구매·판매 활동, 전자상거래 추진실적
- 연구모임의 자체 경영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안정적 소득 추구
 - 연말 총회시 시산표 작성 등 재무분석을 통한 지속적 경영
 - 경영 컨설팅을 통한 자체 경영분석으로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

사. 주요사업

(1) 연구모임 자율학습활동 지도

- 지원대상 : 188개회
- 사업비 : 188백만원(국비44 도비50 시군비94)
- 편성과목 : 기타수당, 수용비, 재료비, 보상금, 임차료, 업무추진비 등
- 시군별 지원내역
 - 수원4, 성남4, 부천4, 안양2, 안산4, 용인10, 평택10, 시흥4, 화성4, 이천12, 김포12, 광주8, 안성10, 의왕4, 오산2, 여주16, 양평16, 고양4, 의정부2, 남양주4, 파주12, 구리2, 포천4, 양주12, 가평2, 연천20
- 지도활동 결과보고 : '08. 12. 10한
 - 도 총괄 양식

시도	연구회명	조직수	회원수	교육 횟수	참여 인원	브랜드명	활동등급평가				
							매우 활발	활발	보통	미흡	매우 미흡
○○도	계										
	000										
	000										

※ 연간 활동실적 : 매우활발(10회이상), 활발(6~9회), 보통(3~5회), 미흡(1~2회), 매우미흡(없음)

- 시군양식

시군	연구회명	조직수	회원수	교육 횟수	참여 인원	브랜드명	활동등급평가				
							매우 활발	활발	보통	미흡	매우 미흡
○○시	계										
	000										
	000										

- 연구모임 과제교육(자율학습) 평가

구 분	조직수	회원수	조사 회수	과제교육 평가결과(설문 등)					
				계	매우만족	만족	보통	불만	매우불만족
계									
도									
시군									

○ 연구모임 육성 현황

품목	연구회명	조직수	회원수	소속시군(조직/회원)
채소	000시 고추연구회	2	70	00시(1/45), 00군(1/25)
	000군 배추연구회	1	50	00군(1/50)

○ 조직유형

계	시군단위	광역단위	도단위

※ 광역단위 : 2~3개 시군 연합연구모임

○ 지역별 특수사업 추진

시군	연구모임명	사업명	주요사업내용

○ 문제점 및 건의사항

-

(2) 영농현장문제해결과제 지원

○ 목 적

- 농업인 생산자단체(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등)들의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과제 지원으로 소득 증대 기여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활동을 촉진하고 참여하는 회원의 사기 진작으로 연구모임 활성화 추진

○ 추진방향
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대상으로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 제고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생산성 향상, 수확후 관리기술, 유통과 판매망 확충으로 안정적 농산물 판로 구축

○ 사업내용

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개발
- 농업인연구모임에서 개발된 기술(내용) 중 확대가 필요한 내용의 사업화 추진
- 우수 연구모임 활동성과의 체계적 홍보를 통하여 파급효과 거양

○ 지원내역

- 사 업 량 : 3개소
- 사 업 비 : 450백만원(개소당 150백만원)
- 시군별 국비 지원내역

시 군	사 업 명	예산액 (백만원)			
		계	국비	지방비	자부담
계	28개	450	180	180	90
광주	순환형 유기축산 한우 브랜드 육성	150	60	60	30
김포	수확후 쌀 품질유지 저장, 보관 시설설치	150	60	60	30
이천	고품질 벌꿀생산 및 제품 다양화	150	60	60	30

○ 추진체계

- 사업 주관기관 :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
- 선정절차
 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사업계획서를 도단위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

-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
 -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의 참여 농업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
 - 인·허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추진
 - 사업변경, 사업포기 등이 있을 시에는 도농업기술원장의 승인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
 - 사업명과 사업계획 전체를 변경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후 사업 추진
- 연구모임 교육
 - 선정된 사업의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요령, 사업비 집행 방법, 관련기술 등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 실시
- 사업비 지원방법
 - 사업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,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함
- 사후관리
 -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기술지도 강화
 -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단계별 지도를 철저히 하고 기술 확산 도모
 -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기대효과
 -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애로기술의 공동 해결로 농업 경쟁력 제고
 -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등 생산자 조직의 경제적 이익 증대

○ 보 고 : 2008. 1. 10

- 영농현장문제해결과제 지원 사업계획 : 2008. 1. 10

(사업명) 휴먼명조 18point

※ 사업담당 : 00농업기술센터 00과 농촌지도사 00 전화(지역번호)000-0000

목 적(15point)

○ 목표치가 설정된 구체적인 목적 기술(14point)

연구모임 현황

○ 대표자(전화번호) :

○ 주 소 :

○ 담당직원(직급, 성명) :

사업계획

○ 기 간 :

○ 규 모 :

○ 사 업 비 : 백만원(국비 , 지방비 , 자부담)

○ 총사업비 투자계획

항 목	면적(규모), 단위	수 량	금액(천원)	비 고

○ 사업내용(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)

-

○ 추진 순기표(세부 사업별)

세 부 추 진 내 용	추진 시기 (월)		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	11	12
○												
○												

기대효과

○ 기술적,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(추정)

<사업추진결과 보고> 2008. 11. 30

1. 사업명 :

2. 연구모임명 :

3. 대표자 : (전화 :)

4. 주소 :

5. 추진실적

○ 예산

세부사업별	국비	도비	시군비
0			
0			

○ 사업내용

6. 기타 추진내용

○

7. 사업성과

○ 경제적 성과

○ 사업(기술) 확산 여부

○ 지역사회기여

8. 추진사례 홍보(관련자료 사진 첨부)

<붙임>

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1. 제정이유

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을 농촌지도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농촌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 활동함(안 제2조)
- 나. 연구모임의 명칭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품목별 시군단위 연구회, 품목별 연합회, 품목별 중앙단위 연합회 등으로 조직함(안 제4조)
- 다. 연구모임 활동은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 배양 및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(안 제3조)
- 라. 연구모임의 체계적인 조직, 운영 등을 위하여 육성위원회를 두며, 전담부서 등을 지정하여 운영함(안 제6조, 제11조)

3. 관계법령 : 농촌진흥법 제2조

농촌진흥청 훈령 제 691 호

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2005. 7. 18

농촌진흥청장

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농촌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“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”(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)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지도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) ① 시군단위 연구모임은 “00시구(군) 00연구회”라 한다.

②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단위 연구모임은 “00도 00연구회”라 한다.

③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단위 연구모임은 “ 00도00연구회”라 한다.

④ 중앙단위 연합모임은 “한국00연구중앙연합회“ 라 한다.

제4조(연구모임의 조직) ① 연구모임은 시군단위조직, 광역단위조직, 도단위 연합회, 중앙단위 연합회 등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1. 시군단위 조직은 지역특화작목 및 수출(가능)작목 등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2. 광역단위 조직은 1개 시군에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가수가 적을 경우 다수 시군 또는 도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.

3. 도단위 연합조직은 품목별 시군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4. 중앙단위 연합조직은 품목별 도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② 단위연구모임의 회원수는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연구모임은 자체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.

1. 회칙에는 연구모임의 명칭, 목적, 사업, 회원, 임원, 회의,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5조(활동) 연구모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.

① 연구모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간 분기별 1회 이상의 정례모임을 개최한다.

② 연구모임의 효율적인 육성에 필요한 리더쉽 및 기타 필요한 교육, 선진지 견학 등을 회원, 지도자 및 지도공무원(전문지도사,관리자)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.

③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(생산, 유통, 가공, 판매 등)에 관한 연구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.

- ④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산자가 시장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.
- ⑤ 소비자단체,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.
- ⑥ 연구모임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모임육성위원회)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지도공무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.
-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에서 연구모임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연구모임의 등록, 부서별 사업지원, 활동방향 심의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지원) ①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은 효율적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.

- ② 연구모임별 전담지도사(연구사) 1인 이상을 지정한다.
- ③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의 시범사업 및 주요사업을 연구모임 회원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다
- ④ 연구모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제10조(평가) ① 매년 연구모임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 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시상하고 인센티브사업을 우선 지원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